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801호 2010. 10. 19(화)

◀ 입법예고 ▶

○포항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지원조례안 입법예고(제2010-907호) 2

◀ 고 시 ▶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제2010-17호) 7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제2010-19호) 8

◀ 공 고 ▶

○도시계획시설(사방기념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안” 열람 · 공고(제2010-886호) 9

회 람									
--------	--	--	--	--	--	--	--	--	--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0 - 907호

포항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 10. 13.

포항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시민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포항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시민단체에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청소년기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1.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전화 270-2075, FAX 270-2070, E-mail : saram0308@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
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함
4.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함
5.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함
6. “시민단체”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행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함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 ①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단체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 체계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포항시지역 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포항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사업 실적평가
 4. 범죄예방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의 연계사업 추진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민단체의 요건)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함
 - 3. 자체적으로 근무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함
- ② 제1항 이외의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필요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포항시남구고시 제2010-17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새로이 설치한 지적기준점 성과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항시 남구청장

2010.10.13

명 칭	기준점 번 호	직각좌표계 원 점 명	직 각 좌 표		설치일자	소 재 지	표지 재질	성과보관 장 소
			X	Y				
삼각보조점	보104	동부원점	278537.44	230796.94	2010.09.08	효자동582	표석	남구 건축지적과
삼각보조점	보105	동부원점	278466.80	231081.90	2010.09.08	상도동 498-1	표석	남구 건축지적과
삼각보조점	보106	동부원점	278880.02	231293.51	2010.09.08	상도동 450-8	표석	남구 건축지적과
삼각보조점	보107	동부원점	278913.29	231129.54	2010.09.08	상도동 452-5	표석	남구 건축지적과

포항시북구고시 제2010-19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새로이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 성과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항시 남구청장

2010.10.19

명칭	기준점 번호	직각좌표계 원점명	직각좌표		설치일자	소재지	표지 재질	성과보관 장소
			X	Y				
도근점	도3658	동부원점	282681.61	233630.74	2010.09.28	송도동 253-89	철재	남구건축지적과
도근점	도3659	동부원점	282467.77	233621.42	2010.09.28	송도동 253-44	철재	남구건축지적과
도근점	도3660	동부원점	282414.13	233746.04	2010.09.28	송도동 254-100	철재	남구건축지적과
도근점	도3661	동부원점	282258.78	233876.19	2010.09.28	송도동 254-78	철재	남구건축지적과
도근점	도3662	동부원점	282240.02	233989.92	2010.09.28	송도동 378-437	철재	남구건축지적과
도근점	도3663	동부원점	282035.58	234066.26	2010.09.28	송도동 378-437	철재	남구건축지적과
도근점	도3664	동부원점	281865.91	234110.22	2010.09.28	송도동 254-22	철재	남구건축지적과
도근점	도3665	동부원점	281776.03	234177.46	2010.09.28	송도동 378-437	철재	남구건축지적과
도근점	도3666	동부원점	281605.75	234267.45	2010.09.28	송도동 378-437	철재	남구건축지적과
도근점	도3667	동부원점	281517.48	234323.58	2010.09.28	송도동 378-437	철재	남구건축지적과
도근점	도3668	동부원점	281398.24	234401.35	2010.09.28	송도동 378-437	철재	남구건축지적과
도근점	도3669	동부원점	281369.54	234345.72	2010.09.28	송도동 254-280	철재	남구건축지적과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0 - 886호

도시계획시설(사방기념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안”
열람 · 공고

우리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88-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방기념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안” 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10월 4 일

1. 공원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사방기념공원	근린 공원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88-4전 일원	49,900	(증) 768,975	818,875	경북 고시 제2005-92호 (2005.4.14)	포항시 고시 제2010-34호 (2010.5.17)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주요시설 내 용	시 설 규 모 (㎡)									구 성 비 (%)		
		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49,900	증 768,975	818,875	914	증 1,850,16	2,764,16	1,500	증 3,075,52	4,575,52	100	-	100
도로	14개 노선	5,027	증 414	5,441							10.0	감 9.34	0.66
조경 시설	휴게광장 외 2개시설	3,255	-	3,255							6.5	감 6.1	0.40
휴양 시설	데크쉼터	790	-	790							1.6	감 1.5	0.10
유 회 시설	캐스캐이드 외 1개시설	1,270	-	1,270							2.5	감 2.34	0.16
교 양 시설	사방기념관 외 2개시설	1,485	증 2,554	4,039	914	증 1,850,16	2,764,16	1,500	증 3,075,52	4,575,52	3.0	감 2.51	0.49
편 의 시설	주차장	3,280	-	3,280							6.6	감 6.2	0.40
교 통 시설	진입광장	80	-	80							0.2	감 0.19	0.01
기타	녹지	34,713	증 766,007	800,720							69.6	증 28.18	97.78

나. 시설 및 건축면적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지정면적	49,900	증 768,975	818,875	100.0	-	100.0	
공원시설면적	15,187	증 2,968	18,155	30.4	감 28.18	2.22	*법적기준 40%이하 (시설면적/공원지정면적)
건축면적	914	증 1,850,16	2,764,16	1.83	감 1.5	0.33	*법적기준 10%이하 (건축면적/공원면적)

다.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시설 구분	도 면 번 호		시 설 명 (명 칭)		위 치		시 설 규 모 (㎡)						비 고	
							부지면적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총 계							49,900	818,875		914	2,764.16	1,500	4,575.52	
도로	소계						5,027	5,441						
	도로						전지역	5,027	5,441					
조경 시설	소계						3,255	3,255						
	1	1	휴게광장	휴게광장			80	80						
	1-1	1-1	휴게광장	휴게광장	오도리 53전	오도리 53전	48	48						
	1-2	1-2	휴게광장	휴게광장	오도리 134전	오도리 134전	32	32						
	2	2	연못	연못	오도리 산9입	오도리 산9입	690	690						
	3	3	잔디광장	잔디광장	오도리 63전	오도리 63전	2,485	2,485						
휴양 시설	소계						790	790						
	4	4	테크쉼터	테크쉼터			790	790						
	4-1	4-1	테크쉼터1	테크쉼터1	오도리 산6입	오도리 산6입	600	600						
	4-2	4-2	테크쉼터2	테크쉼터2	오도리 산65-1묘	오도리 산65-1묘	190	190						
유희 시설	소계						1,270	1,270						
	5	5	캐스캐이드	캐스캐이드	오도리 63전	오도리 63전	715	715						
	6	6	이벤트광장	이벤트광장	오도리 66입	오도리 66입	555	555						
교양 시설	소계						1,485	4,039		914	2,764.16	1,500	4,575.52	
	7	7	사방기념관	사방기념관	오도리 61전	오도리 61입	1,415	1,499		914	998	1,500	1,584	
	8	8	야외 디오라마관	야외 디오라마관	오도리 502묘	오도리 502묘	70	70						
	-	11	재난재해 안전체험관	재난재해 안전체험관	-	오도리 2전	-	2,470	지상 2층	-	1,766.16	-	2,991.52	

시설 구분	도 면 번 호		시 설 명 (명 칭)		위 치		시 설 규 모 (㎡)								비 고
							부지면적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편의 시설	소계						3,280	3,280							
	9	9	주차장	주차장	오도리 51전	오도리 51전	3,280	3,280							
	9-1	9-1	주차장1	주차장1	오도리 산9입	오도리 산9입	2,805	2,805							
	9-2	9-2	주차장2	주차장2	오도리 63전	오도리 63전	475	475							
교통 시설	소계						80	80							
	10	10	진입광장	진입광장			80	80							
	10-1	10-1	진입광장1	진입광장1	오도리3 8-1전	오도리3 8-1전	48	48							
	10-2	10-2	진입광장2	진입광장2	오도리 73묘	오도리 73묘	32	32							
녹지	소계						34,713	800,720							
	-	-	녹지	녹지	전지역	전지역	34,713	800,720							

라.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도 로 종 류			도 로 제 월			기 능	기 점	중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정	계		13		1,202	5,027				
변경후	계		14		1,271	5,441				
기정	소로	2	1	9.5	248	2,356	주진입로	오도리 88-4도 (동측구역계)	오도리 55전 (주차장)	
기정	소로	3	1	6	63	378	간선도로	오도리 59전 (주차장)	오도리 산8입 (진입광장)	
기정	소로	3	2	6	63	378	간선도로	오도리 55전 (주차장)	오도리 산8입 (진입광장)	
기정	소로	3	3	3	137	411	간선도로	오도리 53전 (이벤트광장)	오도리 63전 (진입광장)	
기정	소로	3	4	3	132	396	보조간선도로	오도리 66입 (이벤트광장)	오도리 136전 (남측구역계)	
기정	소로	3	5	2	39	78	보조간선도로	오도리 88-1 (진입광장)	오도리 73묘 (진입광장)	
기정	소로	3	6	2	32	64	보조간선도로	오도리 73묘 (진입광장)	오도리 70-1전 (소로2-1)	
기정	소로	3	7	2	16	32	보조간선도로	오도리 70-1전 (소로3-6)	오도리 66입 (소로3-12)	
기정	소로	3	8	2	55	110	보조간선도로	오도리 65-2전 (테크센터2)	오도리 134전 (휴게광장)	
기정	소로	3	9	2	46	92	보조간선도로	오도리 산9입 (연못)	오도리 502묘 (디오라마관)	
기정	소로	3	10	2	264	528	보조간선도로	오도리 502묘 (디오라마관)	오도리 산6입 (기존산책로)	
기정	소로	3	11	2	87	174	보조간선도로	오도리 산6입 (테크센터2)	오도리 산6입 (소로3-10)	
기정	소로	3	12	1.5	20	30	보조간선도로	오도리 66입 (소로3-7)	오도리 66입 (소로2-1)	
신설	소로	3	13	6	69	414	간선도로	오도리9-1전 (주차장)	오도리 산6입 (소로3-13)	

3. 조서계획 결정(변경)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계재 생략)

4. 도시계획시설(사방기념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

가. 도로 및 교양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구분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후	
도로	소로3류13호	-	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제2010-34호)에 따라 공원면적 증가 - 49,000㎡ → 818,875㎡ (증768,975㎡) • 우수한 사방기술을 전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재난, 재해 대비 등 사방사업에 필요한 지식 제공의 장을 추가 조성하고자 함. • 사방기념공원 관리를 위한 관리사 증축(84㎡)
교양시설	재난·재해 안전체험관	-	2,470	
	사방기념관 (관리사증축)	1,415	1,499	

5.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포항시 건설도시국 도시녹지과

(☎ 054-270-3223, 팩스 270-3220)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열람장소 비치

8. 본 도시계획시설(사방기념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